

# 친환경소재대학원 학칙

제정 2005. 9. 1    개정 2014. 3. 1    개정 2024. 7. 2  
개정 2009. 3. 1    개정 2017.10.26    개정 2024. 7.30  
개정 2012. 6. 1    개정 2020.10.21    개정 2025 .6.10  
개정 2012.11.16    개정 2023. 9. 1

## 제 1 장    총    칙

제1조(목적) 포항공과대학교 친환경소재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은 친환경소재관련 과학과 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 및 연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갖춘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친환경소재산업과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(개정: 2023.9.1)

제2조(과정)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(이하 “석사과정”이라 한다)과 박사학위과정(이하 “박사과정”이라 한다),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(이하 “통합과정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3조(학위수여 및 학위분류) 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다만,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각 학위는 전문학위와 학술학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조(학과 및 정원) ① 본 대학원에는 친환경소재학과 와 배터리공학과를 두며, 친환경소재학과 내에는 세부전공으로 철강 및 수소를 운영한다. (개정: 2024.7.00)

② 과정별 정원은 교육부에 통보된 정원으로 한다. (개정: 2017.10.26)

## 제 2 장    입 학 · 편입학 · 재 입 학

제5조(입학시기)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.

제6조(지원자격)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소

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
②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
제7조(지원절차) ① 본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과정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을 치러야 한다.

1.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지원하는 자 : 입학지원서, 대학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,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, 연구실적 및 연구계획서

2.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자 : 입학지원서, 석사학위증명서 또는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,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, 석사학위논문 별쇄본

③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친환경소재대학원장(이하 “대학원장”이라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입학전형) ① 본 대학원의 입학에 필요한 전형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 전형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.

1. 학력 및 학업성취에 대한 서류심사

2. 영어시험(비영어권 국가의 경우)

3. 전공구술시험(외국인의 경우 출신 대학 교수 2인 이상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음)

②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의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9조(입학절차) 본 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편입학) ① 타 대학 교원이 본 대학원으로 전직함에 따라 그 지도학생이 본 대학원으로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(이하 “대학원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입학할 수 있다. 다만, 편입학생수는 해당년도 입학정원 내에 한한다.

② 전 소속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, 수업연한, 재학연한 등 제반 학사사항은 제13조 제2항을 준용한다.

③ (삭제)

제11조(재입학)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할 수 있다.

다만,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.

1. 학칙 제17조 제1항의 제3호의 재학연한 초과자(개정: 2025.6.10)
  2. 학칙 제17조 제2항의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(개정: 2025.6.10)
- ②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내용을 참작하여 그 학점을 재 사정한다.

### 제 3 장 등록 및 학적변동

제12조(등록)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중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.

제13조(전과) ① 본 대학의 타 대학원에서 본 대학원으로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전과를 하고자 하는 본 대학원 학생은 각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할 수 있다. (개정: 2017.10.26)

② 전과 허가를 받은 학생이 기존 소속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, 수업연한, 재학연한 등 제반 학사사항은 이 학칙에도 불구하고, 대학원위원회의 재사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, 시행한다. (개정: 2017.10.26)

③ (삭제)

④ 소속을 변경할 학생이 일반대학원 통합과정에 재학 중일 경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할 시 박사과정으로 소속변경 할 수 있다. (신설: 2012.11.16)

1. 등록학기 3학기 이상
2. 석사학위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이수
3. 평균평점 3.0 이상
4. 박사자격시험 합격

⑤ 통합과정 재학기간 내에 치른 박사자격시험의 결과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. (신설: 2012.11.16)

제14조(휴학)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.

② 휴학기간은 계속해서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통산하여 석사과정에서는 3개 학기, 박사과정에서는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의무 복무를

위한 군입대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(복학) ① 휴학기간이 만료했거나, 휴학사유가 소멸된 학생은 당해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.

② 군제대 복학은 제대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하며 군제대 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.

제16조(자퇴)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의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제적) ①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적하고 이러한 내용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통보한다.

1. 휴학기간 만료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자
2.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
3.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
(개정: 2020.10.21.) (개정: 2025.6.10)

4. (삭제) (개정: 2025.6.10)

5. 사망한자 (신설: 2025.6.10)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한다  
(신설: 2025.6.10)

1. 학사경고를 통산2회 받은 자로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자
2. 학칙 제44조에 의하여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

제18조(재심청구) 제15조에 의해 제적된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적통보가 도착한 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(개정: 2020.10.21)

## 제 4 장 수업 및 학점

제19조(수업일수) 수업일 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(매학기 15주 이상)으로 한다.

제20조(교과과정)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1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 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,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점의 조기취득, 과정간의 학점이월,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및 타 대학 대학원의 취득학점인정, 학위논문의 탁월성이 인정되어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충족

시킨 학생은 수업연한을 통합과정은 1년 6개월, 석사과정은 1년, 박사과정은 6개월 단축할 수 있다. (개정: 2023.9.1)

②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3년, 박사과정 6년, 통합과정 7년으로 한다.

③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통합과정에 입학할 경우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한다.

④ 각 과정별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연한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1년씩 총장이 연장할 수 있다.

제22조(상주재학) 최소한 석사과정의 학생은 2개 학기, 박사과정의 학생은 3개 학기, 통합과정은 5개 학기를 상주 재학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(개정: 2023.9.1)

제23조(과정의 수료) ① 이 학칙 제24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학업성적의 평점 평균이 B0(3.0)이상이며 박사과정에서 3개 학기, 통합과정에서는 5개학기 이상을 등록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: 2023.9.1)

② 제1항에 의해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연구생에게는 학생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.

제24조(수료학점) ①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은 28학점, 박사과정은 32학점, 그리고 통합과정은 60학점으로 한다.

② 각 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최저 교과학점은 석사과정은 18학점, 박사과정은 12학점, 그리고 통합과정은 30학점으로 한다.

제25조(교과학점과 연구학점) ① 교과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과정의 과목을 통해서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. 다만,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교과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400단위 과목 6학점에 한한다.

② 연구학점은 논문연구, 세미나, 실험실습 등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.

제26조(학기당 취득학점) 본 대학원 과정의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3학점이상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

제27조(학점부여 기준) 교과학점은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다만, 논문연구, 세미나, 실험실습 등의 연구학점은 이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.

다.

제28조(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) ① 본 대학 학사과정의 학생이 본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학생이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은 박사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(개정: 2025.6.10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의 각 과정에서의 인정범위는 각 과정의 졸업 및 수료에 충족되는 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한하되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(개정: 2020.10.21)

제29조(일반대학원 학점취득 인정) 본 대학원 학생은 본 대학 일반대학원(이하 “일반대학원”이라 한다)에 개설되는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으로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의 지도교수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는 없다.

제30조(성적평가) ① 교과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의 성적은 시험성적, 과제물, 출석 사항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(개정: 2024.7.30)

등급	A+	A0	A-	B+	B0	B-	C+	C0	C-	D+	D0	D-	F	S(급)	U(낙)	W(포기)
평점	4.3	4.0	3.7	3.3	3.0	2.7	2.3	2.0	1.7	1.3	1.0	0.7	0	불계	불계	불계

② 연구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의 성적은 S(합격) 또는 U(불합격)로 부여한다.

③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(미완)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31조(학점인정 및 평점계산) ① D- 이상 또는 S를 받은 과목의 학점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S학점은 평점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32조(수강신청의 변경)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동안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. (개정: 2020.10.21.) (개정: 2024.7.30)

제33조(수강포기) 학생은 개강 후 4주째부터 9주 이내에는 과목담당 교수,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, 그 성적은 W로 처리한다.

(개정: 2020.10.21)

제34조(추가시험)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는 과

목담당 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0.10.21)

②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 성적정정마감일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0.10.21)

제35조(학점인정일수) 타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제36조(재수강)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37조(타 대학원 학점인정) ①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본 대학 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.

② 본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총장이 인정하는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 (개정: 2020.10.21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38조(특별강좌) 본 대학원은 방학기간 중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과정에는 특별강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비 학 위 과 정

제39조(공개강좌) 본 대학원에서는 교양 또는 학문연구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제40조(연구생) ① 본 대학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정과목 또는 연구과제에 수강 및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심사와 전형에 합격할 경우 연구생의 신분으로 수강 또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.

② 본 대학원은 연구생에게 일체의 경비(수강료 등)를 부과하지 않으며, 연구에 참여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재정지원제도

제41조(재정지원제도) ① 본 대학원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(개정: 2014.3.1.)

② 학생조교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2조(장학금 이중 수혜의 금지) (삭제: 2014.3.1.)

## 제 7 장 징 계

제43조(학사경고) ①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B0(3.0)에 미달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.

② 재학기간중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.

제44조(징계)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.

② 징계는 근신, 정학(유기, 무기)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.

③ 모든 징계는 징계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제된다. 징계기간 만료전이나, 무기정학자의 징계해제는 대학원장이 지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징계해제를 청원한다.

## 제 8 장 대 학 원 위 원 회

제45조(구성)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원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. 다만, 필요시 본 대학 교원중에서도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제46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47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대학원의 입학,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본 대학원 학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본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4. 본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  5. 본 대학원 관련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  6. 공개강좌와 연구생에 관한 사항
  7. 대학원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
  8. 장학금에 관한 사항
  9. 대학원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
  10.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중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48조(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)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9 장 학 위 수 여

- 제49조(학위수여) 본 대학원에는 공학석사와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,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을 준용한다.
- 제50조(심사위원) 전항에 의거하여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지도교수가 아닌 본대학의 전임교원을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## 제 10 장 학 칙 개 정

- 제51조(학칙개정절차) 이 학칙의 개정은 사전공고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(개정: 2020.10.21)

## 제 11 장 준 용

- 제52조(준용)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 학칙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부칙 제1조, 제2조 3항 및 제3조 3항의 경과사항을 삭제하며,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학칙은 2012년 6월 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6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학생소속 변경 및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의 제10조 및 13조를 적용하며,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년 10월 26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제4조의 플랜트엔지니어링 세부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학칙은 2020년 10월 2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(개정, 시행일) 이 학칙은 2024년 7월 2일부로 개정하고, 2024년 5월 27일부로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학칙은 2024년 7월 30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학칙은 2025년 6월 10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## 연구실적증명서

본 적

도

성 명

20 년 월 일생

이 이는 본 대학원 석사 학위과정에서 박사  
년 월 간을 연구하여

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.

20 년 월 일

포항공과대학교 친환경소재대학원장 (학위) ○ ○ ○